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41호

2019년 5월 3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110호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94호 인천광역시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 · 규격에 관한 고시 1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93호 2019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활성화 사업 선정 결과 공고 .. 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99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공고 21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03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04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회 람									
--------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의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규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제명)
-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함(제1조 ~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5월 3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3110 호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창안등급	인사특전의 종류	인사특전 대상자
금상 · 은상 · 동상	특별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승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경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승진 대상자 중 승진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 인사특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장려상	실적가점 등	•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 비 고

1. 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2. 2명의 공동 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는 해당 특전을 부여하고, 부제안자는 주제안자의 인사특전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인사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3. 3명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4. 채택제안의 실행자에 대하여도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성 방법

-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직인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 목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6호서식]

제안 실시 평가서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보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제안평가	구분	·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효과	금액 또는 개선실적	
<p>「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p> <p>※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p>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8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				
주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제안의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94호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안자망어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지지줄 사용 기준과 규격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9. 5. 1.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 · 규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연안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뜬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제3조(지지줄 사용) 자망어구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1가닥 또는 2가닥의 지지줄을 뜬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99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지정 대상을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장

1. 공고명 : 인천광역시 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종류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관리자)
1	유형문화재	명대 철제도종 (明代 鐵製道鍾)	1구	인천광역시장 (시립박물관장)
2	기념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 (迎日鄭氏 判決事公派· 承旨公派 東春墓域)	분묘 17기, 석물 66점, 42,212㎡	중중
3	문화재자료	양주성 금속비 (梁柱星 金屬碑)	1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시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시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5. 연락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가. 전화(송)번호 : (T)032-440-4033 / (F)032-440-8693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1층 문화재과

다. E-mail : proxis@korea.kr

[붙임] 지정예고 사유 1부.

붙임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①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대상

- 명 칭 : 명대 철제도종(明代 鐵製道鍾)
- 소유자(관리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옥련동)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140cm, 지름 81cm, 무게 0.4톤
- 재 질 : 철
- 조성연대 : 1638년 (중국 명나라 崇禎11년)
- 지정사유
 - 1638년(崇禎11)에 하남성 상구현(商丘縣)에 있는 태산행궁(泰山行宮)에 걸었던 도교 종이다. 형태는 명대 불교종의 특징인 구연부가 벌어진 팔능형에 쌍룡의 중뉴가 있으며, 세부 모양은 도교의 특징인 팔괘가 장식됨.
 - 전체적으로 구조상태가 양호하고, 종신에 제작년대와 봉안처, 시주자의 관직, 장인 등이 기록된 양각 명문이 잘 남아있어서 사료적 가치는 물론 근대 동아시아 및 인천의 역사적 특수상황을 전해주는 중요한 유물임.
 - 근대 동아시아 연구에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중국 종 연구의 기준작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유일한 도교(道敎) 종으로 희소성이 있는 점, 종신의 명문이나 구조방법은 자료적 가치와 금속공예사적 의의도 있다. 좌우의 송(宋), 원대(元代) 범종(梵鍾)은 1982.3.2일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4, 3호로 지정된 바 있어 때늦은 감이 있음.

② 인천광역시 기념물 지정 예고 대상

- 명 칭 :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
(迎日鄭氏 判決事公派·承旨公派 東春墓域)
- 소유자(관리자) :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증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 68(동춘동)
- 수 량 : 분묘 17기, 석물 66점, 42,212m²
- 재 질 : 화강암(석물)
- 조성연대 : 조선시대(15세기 후반~19세기 초)
- 지정사유
 - 영일 정씨는 1607년 정제의 묘소를 조성한 후 400여 년 동안 인천에서 세거한 사대부 가문으로 영일 정씨 가문의 역사를 통하여 조선 중·후기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해 줌.
 - 묘비석을 비롯한 석물 66점을 통하여 복두공복에서 금관조복으로 변화하는 문인석 등으로 조선 후기 미술사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으며, 증종 소유의 교지, 화회문기, 완문, 소지 등 고문서를 이용하여 조선의 정치와 사회경제 상황 등을 살필 수 있음.
 - 현재 묘역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등산로 옆인 관계로 접근이 쉬워 훼손의 우려가 있고, 근래에 들어 능묘조각과 함께 능 앞을 지키고 있는 석수, 향로석, 장명등, 혼유석과 같은 석물들도 도난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도난방지와 함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③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대상

- 명 칭 : 양주성 금속비(梁柱星 金屬碑)
- 소유자(관리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3-35(운남동 444-3)
- 수 량 : 1기
- 규 격 : 높이 91 × 너비 31 × 두께 3cm
- 재 질 : 철
- 조성연대 : 1877년 (고종 14년)
- 지정사유
 - 인천광역시 선정비 가운데 유일하게 철로 조성된 비이다. 철비는 전국에 60여 기 정도로 드문 편임.
 - 양주성 비는 인천 관방 연구의 자료, 인천 지방 수령의 치적과 관련하여 선정비의 조성 연구 자료 등 학술적 가치 및 타 지역 철비와의 비교 또는 석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조선 시대 선정비 건립의 특징을 찾아 낼 수 있음.
 - 1993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었으나, 양주성 금속비는 이미 원 위치에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기념물로서의 의미는 이미 상당 희석되었다 볼 수 있고, 재질의 특성 상 실내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문화재 자료로 유형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참고사진>



명대 철제도종, 인천시립박물관, 1638년(明 崇禎 11)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 전경



양주성 금속비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893호

2019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활성화 사업 선정 결과 공고

2019년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주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4. 29.

인천광역시장

□ 선정 결과

○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관련 사업

단 체 명	사 업 명	보 조 금 결정액(원)	비고
(사)인천소비자공약네트워크	GDP 3만불시대! 균형있는 삶을 만들자	5,240,000	
(사)한국행복가족	ADHD 부모-자녀 가족상담	7,314,000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옐로우하우스, 인천성매매집결지 폐쇄과정 아카이브:살다, 지우다, 남기다	10,960,00 0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나는야~~~양성평등히어로	5,750,000	
인천여성회	영화로 펼쳐지는 성평등 도시, 인천	7,430,000	
인천광역시차세대여성 지도자연합회	도전!골든벨[부부go!, 연인go!, 친구go!]	6,753,0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서비스-치유교실, 성장학교	6,350,000	

○ 양성평등주간 관련사업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결정액(원)	비고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2019년 인천여성대회	32,000,000	
(사)강화여성의전화	여성인권영화제	4,080,000	
인천여성민우회	성평등페스티벌-성평등이 희망이다	7,993,000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관련 사업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결정액(원)	비고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2019인천여성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7,060,000	
아이맘키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맞춤교육 프로그램	5,220,000	
(사)인천여성의전화	인천시 성평등정책과 성평등수준에 대한 분석 및 토론회	8,150,000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역량강화 및 캠페인	5,700,000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03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 신설 (안 제22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기능 신설 (안 제23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간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 우선 구매·촉진 홍보

○ 위탁 및 관리 운영

(안 제24조)

-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유통지원센터 운영 위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7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 (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8765, 이메일 hongjjang6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이하“유통지원센터”라 한다.)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간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 구매·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4조(종전의 제2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제24조(중전의 제22조)제2항은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로, “관리 및 운영에”를 “운영에”로 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제24조를 제2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2조(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u> <u>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이하“유통지원센터”라 한다.)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23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u> <u>2. 사회적경제기업간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u> <u>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u> <u>4. 우선 구매·촉진 홍보</u> <u>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u>
<p><u>제22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제21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u>제2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u></p>

②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3조(지도·감독) (생 략)

제24조(시행규칙) (생 략)

②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지도·감독) (현행과 같음)

제2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

관계법령	<p>□ 사회적기업육성법</p> <p>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개정안 제22조(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종합적 판매·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 상생유통지유통지원센터 설치(전액시비)

나. 추계 결과

-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지원 (6억원)
 - 2019년도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등 = 약 2억원
 - 2020년도 인건비, 홍보비, 임대료, 운영비 등 = 약 1억원
 - 2021년도 인건비, 홍보비, 임대료, 운영비 등 = 약 1억원
 - 2022년도 인건비, 홍보비, 임대료, 운영비 등 = 약 1억원
 - 2023년도 인건비, 홍보비, 임대료, 운영비 등 = 약 1억원
- 년도 비용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금액	2	1	1	1	1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지원

3. 작성자 :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과장 김 경 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상생유통 지원센터						
	소계						
세출	상생유통 지원센터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소계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재원 조달		시비지원	시비지원	시비지원	시비지원	시비지원	
국 비							
시비	소 계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일반회계	2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104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한계를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소재산업, 로봇산업, 전자통신기술, 항공 기술 등의 융합체인 나는 자동차 파브(PAV)산업을 인천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에게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파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함(안 제4조 ~ 제5조)
- 다.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실시토록 함(안 제6조)

라.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 (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8765,

이메일 hongjjang6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화물용 파브(CAV, Cargo Air Vehicle)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파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파브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파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파브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4. 파브산업의 인력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파브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브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브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을 “비행장치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현재 확보된 정부과제 국비와 매칭 시비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으나,
-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
에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임경택